



# 20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빈출지문 암기노트

- 2022~24년 기출 문제 지문
- 2회 이상 반복 출제 지문
- 50분완성, 암기코드 제공



# 부동산학개론

```
[목차]
```

제1편 총론(p3)

제2편 부동산경제(p16)

제3편 부동산시장(p24)

제4편 부동산정책(p38)

제5편 부동산투자(p52)

제6편 부동산금융(p66)

제7편 부동산 개발과 관리(p74)

제8편 부동산감정평가(p89~109)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## 제1편 총론

제1장 개념과 분류

1. 유량과 저량

- 가) **유량**은 일정<u>기간</u>에 측정
- **신규주택 공급량,** 가계소득, 주택거래량, 임대료 수입
- 나) 저량은 일정<u>시점</u>에 측정, 자산
- 주택재고
- 2. 부동산의 복합개념

### 가. 무형적

1) 법률적(제도적)

- 가) 협의(<mark>민법</mark>): <mark>토지와 정착물</mark>
- **부동산** 포함
- 나) 공시방법은 부동산은 등기, 동산은 점유

- 광의는 **등기/등록으로 공시**하는 **준**(의제)

- 20톤 이상 기선, 범선은 등기
- 덤프트럭, 항공기는 등록
-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
- 등기대상아님

다) 정착물은 구거, 교량, 다년생 식물, 담장

- 단,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
- 라) **독립된 부동산**
-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
- (**소유권보존등기된**) **입목**(토지와 분리/양도 가능)
- 2) <mark>경제적</mark>
- **자산**, 자본, <mark>생산요소</mark>, <u>소비재</u>, 상품
- 수익성, 수급조절, 시장정보 포함
- **나. 유형적**(기술적, <mark>물리적</mark>)

- <mark>자연, 공간(지표/지하/공중</mark>), <mark>위</mark>치, <mark>환</mark>경 (비교)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
- 상태로 취급
- 3. 토지용어
- 1) 후보지는 용도지역(택지/농지/임지) 상호간 전환
- 2) **이행지는 택지(주/상/공)**, 농지, 임지**내**
- 세부지역간 <mark>전환</mark>
- 3) **나지**는 지가공시제도의 용어
- **건물**, 기타 **정착물 없음**

- 4) 필지 -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
- 5) 획지

구별

- **접하지**(직접연결되지) **않은 토지**
- 하천으로 변한 토지
- 8) 공지는 건폐율/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
-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
- 9)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

7)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에 잠기거나

6)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

-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

- 인위적/자연적/행정적 조건의해 다른 토지와

위치/지목 등 고려해 토지소유자에 재분배 1)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

10) 환지는 미개발토지를 개발, 개발전 토지

- 세금감면 받기 위한 대토로 도시개발구역 밖 지가 상승 우려
-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(조성토지) 매각부담 큼 - 개발이익이 종전 토지소유자에 귀속될
- 가능성 적다
- 단계가 적어 덜 복잡
- 2) 체비지는 경비충당 위해 환지로 미지정 3) <u>표준지</u>는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

37 <del>프론기</del>는 게기 8개를 미약 같거나 유사한 토지 중 선정 사실상 사용 불가 5) 빈지는 바다/육지간 해변 토지, 소유권 부인

4) <mark>법지</mark>는 토지/도로 등 경계간 **경사**진 부분,

- 6) 지목은 지적제도의 용어 -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
-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
- 4. 주택
- 가. 단독주택: <mark>단/중/가/공</mark>
- 1) <mark>단독</mark>
- 2) **다중**

- 3층/660제곱미터 이하
- 학생/직장인 장기거주
- 실별 최소 면적, 창문 크기 등 적합

- **독립된 주거형태아님**(욕실가능, 취사불가)

3) 다<mark>세</mark>대는 **4층 이하, 바닥면적 합계 <u>660</u>** 

- 3) 다<mark>가</mark>구 4) <mark>공</mark>관
- 나. 공동주택: <mark>아/연/세/기</mark>
- 1) <mark>아</mark>파트
- 2) <mark>연</mark>립은 4층 이하,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
- 이하
- 4) <mark>기</mark>숙사